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60936 홈페이지주소 www.jdttukbaegi.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09.2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8.20

# 정 보 공 개 서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 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강에프앤비(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지강에프엔비(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9.6층 6036호 (보정동, 포레스트프라자)

대표전화: 1522-4171 팩스: 02-472-1177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 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장도뚝배기 외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 (보정동, 포레스				6036호	
지강에프앤비(주)	법인 설립등기일	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시강에프앤미(주)	2015.7.8	2015.7.1 이창관		1522-4171		02-472-1177	
	법인등록번호	134211-0165682		5682 사업자동		69	3-88-00149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511 77 71	지강에프앤비 (주)/이창관 장도뚝배기외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9, 6층 6036호 (보정동, 포레스트프라자)			
대표자	사업(경	사업(경영)기간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3.1 ~ 현재		이창관 1522-4171 02-472-		02-472-1177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장도뚝배기	비벼먹는뚝배기집
상호	장도뚝배기 ○○점	가맹점
상표/서비스표	장도뚝배기	출원번호 4120160007461 등록번호 4103784820000
광고	_	
그 밖의 영업표지	_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650,758	1,470,015	180,743	1,939,776	34,078	2,728
2022년	1,611,967	1,418,086	193,880	1,788,870	51,163	13,136
2023년	1,579,942	1,370,490	209,452	1,488,303	74,701	15,572

- \*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1 74 04 14	012	=1 7101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이창관	대표	2015. 7. <sup>~</sup> 현재	대 표	회사 업무 총괄		
관련 임원	이정된	니 니	2015. 7. 전제	내 표	외시 라구 중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Al o	상근	비상근	¬₽+(o)	
2023년 12월 31일	1		3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상호/이름 구분 기급		사업내용
				계경순대국(등록번호:
가맹본부	지강에프앤비(주)	가맹사업 경영	2016.3.1~현재	20160517)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아곱닭스(등록번호:
가맹본부	지강에프앤비(주)	가맹사업 경영	2017.12.20~현재	20180197)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 장도뚝배기	해당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출원 2016.02.17. 등록 2016.11.23.	출원번호 4120160007461 등록번호 4103784820000	지강에프앤비(주)	2026.11.23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장도뚝배기]를 시작한 날: 2016년 05 월 25일

# 2. [장도뚝배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지강에프앤비(주)	장도뚝배기	이창관	2016.05 ~ 현재	29, 6층 6036호
				(보정동, 포레스트프라자)

# 3. [장도뚝배기] 업종

영업표지	업종				
ᅏᇆᅂᄢ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장도뚝배기 	한식	김치,된장 짜글이 뚝배기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장도뚝배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	1	2	2022.12.3	1	:	2023.12.31	
N F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	5		5	5		2	2	
서울	1	1		1	1				
부산									
대구	2	2		2	2		1	1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1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u> </u>			·			·		
전남									
경북	1	1		1	1		1	1	
경남									
제주				·			·		

# 5. 바로전 3년간 [장도뚝배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	2	0	2	1	5
2022	5	1	0	1	0	5
2023	5	1	0	4	0	2

# 6. [장도뚝배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현황

당사는[장도뚝배기]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수
十世	(영화/이름	8827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지강애프엔비(주)	계경순대국	20160517	한식	38/0	38/0	24/0
가맹본부	지강애프엔비(주)	아곱닭스	20180197	한식	0/0	0/0	0/0

# 7. 바로 전 사업연도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장도뚝배기]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기	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균 매출액	연간 매출액	평균 (상한)		평균 !(하한)	비고
\\\\\\\\\\\\\\\\\\\\\\\\\\\\\\\\\\\\\\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2	123,641	15,455	123,641	15,455	123,641	15,455	1개점 대상
서울								
부산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제주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X 추정비율(2.5)]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장도뚝배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2개	1,390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장도뚝배기]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가맹본부 전체 가맹사업[장도뚝배기외 2]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장도뚝배기]와 관련하여 사용한 광고 및 판촉비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단위: 천 합계	지출 비용 <sup>헌원, 부가세</sup> 가맹본부	미포함) 가맹점	비고
합계			1,090	371 <u>5</u> onesoot	_	
광고	371 <u>C</u>	(비공개)	1,090	37 <u>1</u> 5 onator	_	(धास्त्रभा)
판촉	371 <u>C</u>	(비공개)	_	_	_	_

# 11. 가맹금 예치

해당없음.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주소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지강에프앤비(주)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개점일 중 빠른 날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Ⅳ. 1.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참조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장도뚝배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계약기간에 대	소멸성 비용	
교육비	3,300		한 미경과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 구 할 수 있습니다.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귀하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위 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해당 없음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8,800]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8,80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 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49.5평방미터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5,600~ 56,600]				
인테리어	가맹본부	28,050	1,870	고시게시점	공사전계약 취소	49.5㎡기준 (1,870천원/3.3㎡)
간판	가맹본부	4,450~ 5,450	297~364	공사개시전 착수금 50%이상 납입하고 공사완료보고서 작성후 초도상품납입전	설치전취소	49.5㎡기준 (297~364천원 /3.3㎡) 간판전면 실측 후 정확한비용 재 산 출
의.탁자	가맹본부	6,050	403	· 잔금지급		49.5㎡기준 (403천원/3.3㎡)
주방기기/집 기 비품	가맹본부	14,850	990	초도상품납입전	상품미공급 시	49.5㎡기준 (990천원/3.3㎡)
운영용품	-	2,200		잔금지급		전단지,명함,인쇄 물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30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1. 가맹점을 영위하기 위한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 2.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등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장도뚝배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 분할 납부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에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반환	소멸성 비용	-
로얄티	가맹본부	pos상의카드 매출액의 2%	익월 15일	미 반환	소멸성 비용	-
광고비	가맹본부	협의	익월15일	미 반환	소멸성 비용	_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설치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기맹금, 원·부재료 상품대금, 지체배상금, 위약벌 등 기맹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 외한 나머지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연도의 평균 규모는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영업장부,	가맹점 운영 및 영업과 관련한	매월 1회	문의: 가맹사업부
회계자료	영업장부, 회계자료 작성 및 유지		(1522-4171)
입·출고, 매출상황 기록	POS 시스템에 따른 상품 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입·출고 및 매출 상황 기록 유지	매월 1회	문의: 가맹사업부 (1522-4171)
매출 보고서	품목별 및 일자별로 매출 보고서	매월 1회	문의: 가맹사업부
작성	작성 및 가맹본사 제출		(1522-4171)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 청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재가맹비	_	재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당사의 귀책사유가 발생시	소멸성비용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_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_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 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 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장도뚝배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20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 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중단 및 반환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고,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통 등에

표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20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 다.

- ③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장도뚝배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 ( C L O I )	고급	7 ⊔	
품폭(단위) 	상한	하한	イモ
	별지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장도뚝배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계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장도뚝배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급	비고
		계			2023년 기준

위의 금액은 가맹본부 지강애프엔비(주)의 영업표지 계경순대국과의 통합 비용입니다.

2) 당사가 [장도뚝배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급	비고
	계					2023년 기준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기재된 제품 이외는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별지 참조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명	권장판매가격(단위: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홈페이지공지	
н	지 참조	POS 공지	
<u> </u>	시 삼소	공문발송	
		담당 SV방문 통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합중 함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뚝배기로 사용하는 찌게류 가맹사업	장도뚝배기	해당사항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5km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용시아고 30일 이대에 용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어구 외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용의가 있는 경우 15월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지역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선규 경조 합점 가능)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장도 뚝배기'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장도뚝배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장도뚝배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게약 갱신시 계약 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제9조 제1항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제9조 제1항
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호 제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제9조 제1항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호 제나목
○ [장도뚝배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	제9조 제1항
은 경우	제3호 제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 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라목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일반해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유예기간 없 이 해지하는 즉시해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일반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가 당사의 개점 준비완료 후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제43조 제1항 제1호
2.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의 반복적인 연체 및 채무불이행의 경우	제43조 제1항 제2호
3. 귀하가 지정된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제43조 제1항 제3호
4. 귀하가 영업비밀 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3조 제1항 제4호
5.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이외의 품목을 구매 및 판매 하는 경우	제43조 제1항 제5호
6.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 없이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43조 제1항 제6호
7.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43조 제1항 제7호
8.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한 경우	제43조 제1항 제8호
9.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43조 제1항 제9호
10.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제43조 제1항 제10호
11.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 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제43조 제1항 제11호
12.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3조 제1항 제12호

# 즉시해지 사유

# < 당사가 귀하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ul><li>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li></ul>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
<ul><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li></ul>	│ 세44소 세1항│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기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 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 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 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 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서 제44조 제1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52조 제1호
2. 가맹사업의 동일화 및 활성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52조 제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수정사유에 따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까지 현행 그 대로 유지**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 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문의: 가맹사업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은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 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장도뚝배기]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대한민국 내에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ul><li>뚝배기로 찌개류 메뉴로 업종</li></ul>	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부 (1522-4171)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장도뚝배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주 6일 이상 월25일 이상 개점	
24시간 영업	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	문의: 가맹사업부
(본사와 협의 조정 가능)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1522-4171)
	수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권장 종업원수 (15평 기준)	직접 근무 여부	대체가능 인력	비고
주방:2인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홀:1인		직계가족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팀	2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본사 가맹사업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본사 가맹사업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본사 가맹사업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장도뚝배기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부담	비율	분담 절차	. 6
구분 <sup>①</sup>	성격 <sup>©</sup>	본사부담 <sup>®</sup>	가맹점부담	4	비고 <sup>⑤</sup>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과그 게히 고그 ᆞ 기메저이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n n	"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 (2013년 행사별로 20~50민	의 경우 가맹점당	"	"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 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당사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서 제47조(손해배상)

- ① "을"은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규정의 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때까지 "갑"이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가맹점 영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제18조의 규정의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계약기간에 대한 미경과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 "갑"이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 반환대상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 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등을 감안하여 그 반환 범위를 결정하여 반환한다.
- ④ "갑"은 "갑" 또는 "갑"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⑤ "을"은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갑"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체결 14일전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9	IV.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부담 1. 영업개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6~34	이전의 부담 1)~4)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3	
가맹금 예치	- 보증보험	D-32(1일)	참고하시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0-28(3일)	바랍니다.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8(2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조리시설 및 주방집기 설치 등	D-28~3(2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 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는 점포환경개 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 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 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의 범위내에서 분할지 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의 가망하는 가맹본부의 의 범위내에서 분할지 급 가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이 경우에 는 장한 자를 한 건이 내에 가맹본부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등 수 있는 서류 첨부) → 13차에 걸쳐 가맹본부 보당액 을 분할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40%)	○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 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 지: 영업양도 포 함)되는 경우 가맹 본부 부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1522-4171)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1522-4171)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장도뚝배기]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장도뚝배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조리교육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장도뚝배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3일(8시간)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수시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가맹점 운영의 전문성 및 동일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의 교육방침에 따른 기초 교육 및 훈련을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맹점의 개점일 전까지 필요 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자는 귀하의 점포관리자로 근무 할 수 없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사는 장도뚝배기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 · · · · · · · · · · · · · · · · ·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 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 1577-917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 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첨부) 주방기기 및 집기, 원·부재료 List

▶ 주방기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주방집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원·부재료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く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판매하는 메뉴 및 메뉴별 판매가격 >

상품 • 용역명	권장 가격 (단위:원)	위반 시 책임	비고
김치뚝배기	4,500		
참치김치뚝배기	5,500		
된장뚝배기	4,500		
멸치된장뚝배기	5,500		
우렁된장뚝배기	5,800		
우삼겹된장뚝배기	5,800		
돼지짜글뚝배기	5,500		
참치짜글뚝배기	5,500		
오징어짜글뚝배기	5,500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순두부뚝배기	3,800		
불고기뚝배기	5,800		
제육볶음후라이팬	5,800		
오징어볶음후라이팬	5,800		
계란후라이	500	실구이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스팸	3,000	시정 요구한 날부터	
해장(뼈)뚝배기	6,800	2개월 후에 계약해지	
카레치즈돈까스	6,800		
등심돈까스	5,800		
우동뚝배기	2,800		
꼬마우동뚝배기	1,800		
직화불고기	3,800		
생맥주	1,500		
소주	4,000		
맥주	4,000		
비빔냉면	4,800		
물냉면	4,800		